제주 더 힐 테라스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한국부동산원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코로나19 관련 견본주택 운영안내]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주 더 힐 테라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하여 견본주택 관람 시 입장 인원 및 운영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감염증 확산 상황에 따라 정부정책 등으로 견본주택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 청약 및 공급계약 등 주요 분양일정에 일반고객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체온이 37.5℃가 넘을 경우 *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 * 기타 견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코로나19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가능기간,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수 있습니다.

■ 분양 상담전화, 공식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2021.11.1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2.18.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제주특별자치도)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주택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주택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2.18.)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 1년 이상(2021.02.18부터 계속 거주한 자) 거주자가 1년 미만 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호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O	O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O	O	X	X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주택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jejuthehill.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전매제한 없음(「주택법」 제73조 제1항 별3)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정	03월 02일(수)	03월 03일(목)	03월 10일(목)	03월 21일(월) ~ 03월 23일(수)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사 견본주택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11.16.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주택과 - 10941 호(2022.02.1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680-2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연립주택 지하 2층, 지상 4층 14개동 총 200세대 중 일반공급 64세대
■ 입주시기 : 2024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민영 주택	2022000067	01	067.8960A	67A	67.8960	17.5451	85.4411	30.9504	116.3915	119.3170	5	5
		02	067.8960B	67B	67.8960	17.5451	85.4411	30.9504	116.3915	119.3170	1	1
		03	067.8960C	67C	67.8960	17.5451	85.4411	30.9504	116.3915	119.3170	1	1
		04	073.8235A	73A	73.8235	18.8326	92.6561	33.6524	126.3085	129.7337	2	2
		05	073.8235B	73B	73.8235	18.8326	92.6561	33.6524	126.3085	129.7337	2	2
		06	073.8235C	73C	73.8235	18.8326	92.6561	33.6524	126.3085	129.7337	2	2
		07	073.8235D	73D	73.8235	18.8326	92.6561	33.6524	126.3085	129.7337	2	2
		08	078.1060A	78A	78.1060	19.4175	97.5235	35.6046	133.1281	137.2596	6	6
		09	078.1060B	78B	78.1060	19.4175	97.5235	35.6046	133.1281	137.2596	1	1
		10	084.9595A	84A	84.9595	20.8748	105.8343	38.7289	144.5632	149.3036	2	2
		11	084.9595B	84B	84.9595	20.8748	105.8343	38.7289	144.5632	149.3036	4	4
		12	084.6080C	84C	84.6080	21.0719	105.6799	38.5686	144.2485	148.6858	6	6
		13	084.6080D	84D	84.6080	21.0719	105.6799	38.5686	144.2485	148.6858	1	1
		14	084.6080E	84E	84.6080	21.0719	105.6799	38.5687	144.2486	148.6858	1	1
		15	088.8236A	88A	88.8236	22.0954	110.9190	40.4902	151.4092	156.0941	4	4
		16	088.8236B	88B	88.8236	22.0954	110.9190	40.4902	151.4092	156.0941	1	1
		17	094.1040A	94A	94.1040	22.7913	116.8953	42.8973	159.7926	165.3736	12	12
		18	094.1040B	94B	94.1040	22.7913	116.8953	42.8973	159.7926	165.3736	1	1
		19	096.6551B	96B	96.6551	23.7540	120.4091	44.0602	164.4693	169.8568	1	1
		20	099.8802A	99A	99.8802	24.8137	124.6939	45.5304	170.2243	175.5244	9	9
	합 계										64	64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공급안내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주택형별 면적은 설계도서와 소수점 4째 자리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MDF실, 감시제어반실(관리사무소), 지하층 등의 기타공용면적입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적은 계산상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 차이로 인해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계는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세대, 리플렛 등의 홍보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오니,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청약신청시 주택형 표시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67.8960A	067.8960B	067.8960C	073.8235A	073.8235B	073.8235C	073.8235D	078.1060A	078.1060B	084.9595A
약식표기	67A	67B	67C	73A	73B	73C	73D	78A	78B	84A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84.9595B	084.6080C	084.6080D	084.6080E	088.8236A	088.8236B	094.1040A	094.1040B	096.6551B	099.8802A
약식표기	84B	84C	84D	84E	88A	88B	94A	94B	96B	99A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타입 (약식)	공급 세대수	동(라인)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지정 기간 내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2022.06.15	2022.09.15	2022.12.15	2023.04.15	2023.06.15	2023.08.15	
67A	5	105동 4호 113동 1~4호	1층	5	59,420,000	450,320,000	509,740,000	50,974,000	50,974,000	50,974,000	50,974,000	50,974,000	50,974,000	50,974,000	152,922,000
67B	1	109동 1호	1층	1	59,420,000	475,320,000	534,740,000	53,474,000	53,474,000	53,474,000	53,474,000	53,474,000	53,474,000	53,474,000	160,422,000
67C	1	105동 2호	4층	1	59,420,000	504,320,000	563,740,000	56,374,000	56,374,000	56,374,000	56,374,000	56,374,000	56,374,000	56,374,000	169,122,000
73A	2	106동 2호 111동 3호	1층	2	64,610,000	475,690,000	540,300,000	54,030,000	54,030,000	54,030,000	54,030,000	54,030,000	54,030,000	54,030,000	162,090,000
73B	2	101동 1,4호	1층	2	64,610,000	500,690,000	565,300,000	56,530,000	56,530,000	56,530,000	56,530,000	56,530,000	56,530,000	56,530,000	169,590,000
73C	2	101동 2,3호	4층	2	64,610,000	540,490,000	605,100,000	60,510,000	60,510,000	60,510,000	60,510,000	60,510,000	60,510,000	60,510,000	181,530,000
73D	2	102동 1호 106동 1호	4층	2	64,610,000	565,490,000	630,100,000	63,010,000	63,010,000	63,010,000	63,010,000	63,010,000	63,010,000	63,010,000	189,030,000
78A	6	105동 2,4호 113동 1~4호	3층	6	68,360,000	418,580,000	486,940,000	48,694,000	48,694,000	48,694,000	48,694,000	48,694,000	48,694,000	48,694,000	146,082,000
78B	1	109동 1호	3층	1	68,360,000	443,580,000	511,940,000	51,194,000	51,194,000	51,194,000	51,194,000	51,194,000	51,194,000	51,194,000	153,582,000

84A	2	101동 2,3호	3층	2	74,360,000	447,940,000	522,300,000	52,230,000	52,230,000	52,230,000	52,230,000	52,230,000	52,230,000	52,230,000	156,690,000
84B	4	101동 1,4호 102동 1호 106동 1호	3층	4	74,360,000	472,940,000	547,300,000	54,730,000	54,730,000	54,730,000	54,730,000	54,730,000	54,730,000	54,730,000	164,190,000
84C	6	103동 2호 107동 1호 114동 1~4호	1층	6	74,050,000	547,870,000	621,920,000	62,192,000	62,192,000	62,192,000	62,192,000	62,192,000	62,192,000	62,192,000	186,576,000
84D	1	108동 1호	1층	1	74,050,000	577,870,000	651,920,000	65,192,000	65,192,000	65,192,000	65,192,000	65,192,000	65,192,000	65,192,000	195,576,000
84E	1	114동 4호	4층	1	74,050,000	615,070,000	689,120,000	68,912,000	68,912,000	68,912,000	68,912,000	68,912,000	68,912,000	68,912,000	206,736,000
88A	4	113동 1~4호	2층	4	77,740,000	409,200,000	486,940,000	48,694,000	48,694,000	48,694,000	48,694,000	48,694,000	48,694,000	48,694,000	146,082,000
88B	1	109동 1호	2층	1	77,740,000	434,200,000	511,940,000	51,194,000	51,194,000	51,194,000	51,194,000	51,194,000	51,194,000	51,194,000	153,582,000
94A	12	103동 1,2,3호 104동 1,2,3호 107동 2,3호 114동 1~4호	3층	12	82,360,000	515,560,000	597,920,000	59,792,000	59,792,000	59,792,000	59,792,000	59,792,000	59,792,000	59,792,000	179,376,000
94B	1	108동 1호	3층	1	82,360,000	545,560,000	627,920,000	62,792,000	62,792,000	62,792,000	62,792,000	62,792,000	62,792,000	62,792,000	188,376,000
96B	1	101동 1호	2층	1	84,600,000	462,700,000	547,300,000	54,730,000	54,730,000	54,730,000	54,730,000	54,730,000	54,730,000	54,730,000	164,190,000
99A	9	103동 1,2,3호 104동 1호 107동 2,4호 114동 2,3,4호	2층	9	87,420,000	510,500,000	597,920,000	59,792,000	59,792,000	59,792,000	59,792,000	59,792,000	59,792,000	59,792,000	179,376,000

■ 공통유의사항

- 본 주택은 전용면적이 같을지라도 제주시와 협의에 따라 층별 실생활에 밀접한 테라스 면적 및 측벽에 따른 서비스면적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주택형으로 모집하오니 청약 신청 전 정확히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에 의거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으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호실별 등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전용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없으며 전용 85㎡초과의 경우 주택법 제2조 제6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주택전시관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본 주택의 분양조건(이자후불제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중도금이 미납될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가 발생하며 계약해제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계약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인 자가 분양을 받을 시 「외국인토지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고를 하여야합니다.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 인지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기 공급금액에 해당 공용면적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연체료 납부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공사감리자의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공사 감리자의 공정확인서에 의해 건축공사비(대지매입비 제외)의 50%이상 투입이 확인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에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전용면적은 주택법에 따라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유상옵션 등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유상옵션 등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여 별도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시설별 대지지분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각각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각 세대별 또는 실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근린생활시설 대지지분을 제외한 주택 대지지분에 대한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대지면적 확정에 따라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공급가격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 중 사업주체가 지정한 계좌 외 다른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주택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별도의 이자나 할인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분양계약 시 제출한 모두 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의 반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주택(공동주택)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청약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에 의거 해약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여, 청약예금 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해당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 및 검증 없이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주택소유 여부, 가점별 적용기준 등)을 신청 전에 파악하시고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Ⅱ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청약 관련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 주택형, (전용 85㎡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85㎡초과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85제곱미터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20.0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합니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table>
<tr><th>가점항목</th><th>가점상한</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확인할 서류 등</th></tr>
<tr><td rowspan="9">①무주택기간</td><td rowspan="9">32</td><td>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td><td>0</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8</td><td rowspan="9">■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td></tr>
<tr><td>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20</td></tr>
<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4</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22</td></tr>
<tr><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6</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24</td></tr>
<tr><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8</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26</td></tr>
<tr><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28</td></tr>
<tr><td>5년 이상 ~ 6년 미만</td><td>12</td><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30</td></tr>
<tr><td>6년 이상 ~ 7년 미만</td><td>14</td><td>15년 이상</td><td>32</td></tr>
<tr><td>7년 이상 ~ 8년 미만</td><td>16</td><td></td><td></td></tr>
<tr><td rowspan="4">②부양가족수</td><td rowspan="4">35</td><td>0명</td><td>5</td><td>4명</td><td>25</td><td rowspan="4">■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⑴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⑵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td></tr>
<tr><td>1명</td><td>10</td><td>5명</td><td>30</td></tr>
<tr><td>2명</td><td>15</td><td>6명 이상</td><td>35</td></tr>
<tr><td>3명</td><td>20</td><td></td><td></td></tr>
<tr><td rowspan="9">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td><td rowspan="9">17</td><td>6개월 미만</td><td>1</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0</td><td rowspan="9">■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td></tr>
<tr><td>6개월 이상 ~ 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11</td></tr>
<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3</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12</td></tr>
<tr><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4</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13</td></tr>
<tr><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5</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14</td></tr>
<tr><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6</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15</td></tr>
<tr><td>5년 이상 ~ 6년 미만</td><td>7</td><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16</td></tr>
<tr><td>6년 이상 ~ 7년 미만</td><td>8</td><td>15년 이상</td><td>17</td></tr>
<tr><td>7년 이상 ~ 8년 미만</td><td>9</td><td></td><td></td></tr>
<tr><td colspan="7">※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td></tr>
</table>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 · 저가주택 1호(1세대)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이하이며,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소형·저가주택 공시가격 적용기준

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되었을 경우에는 주택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Ⅲ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 대상자	신청 일시	신청 방법	신청 장소
일반공급	1순위	**2022.03.02(수)** 09: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2.03.03(목)** 09: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자격확인 공통 사전제출서류(일반공급, 예비입주자)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사업주체 견본주택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일자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 발급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23조 2항 7호에 의거 해외거주기간 확인을 위해 필수 제출 * 조회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증명 (기록대조 시작일 : 생년월일 / 기록대조 종료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경우, 군복무기간(10년이상)이 명시

■ 일반공급(가점제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제출서류(추가해당자)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공급 (가점제, 예비입주자)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1년이상 계속해서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위임용(본인 발급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필요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 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3">구비사항</th></tr>
<tr><td rowspan="3">일반
공급</td><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 rowspan="2">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 상기 재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Ⅳ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및 검수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계약체결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일시: 2022.03.10.(목)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2.03.13(일)~2022.03.15(화) • 장소 : 당사 견본주택(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680번지) - 1, 2순위 당첨자 : 계약체결 서류 지참 ※ 계약체결일에 계약체결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일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류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 시간이 상이할 수 있음.	• 일시 - 2022.03.21.(월)~2022.03.23.(수)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680번지)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의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아래 계약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신청자격, 세대주, 당해 거주요건,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확인 등)
- 사전검수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이 발생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기간 내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람.

■ 중복청약 및 이중당첨자 처리기준

-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신청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1인 1건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당첨 시 모두 무효처리 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이후 당첨된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 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2.03.10 (목) ~ 2022.03.19 (토)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2.03.10 (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 세대 발생 및 소명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를 배정함.(미 방문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 됨.
-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주택의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음.(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 예비입주자 중에서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 됨.
-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예비당첨자에 대한 추첨 및 계약안내

- 정당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대상자 소명기간(부적격대상자통보일로 부터 7일) 이후 예비당첨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 일시는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통지한 예비당첨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 일시에 불참 등으로 인해 발생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V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계약기간 및 장소

- 계약체결일시 : 2022.03.21.(월)~2022.03.23.(수)(3일간, 10:00~16:00)
- 계약체결장소 : 제주 더 힐 테라스 견본주택(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680/ 문의전화 : 1899-2787)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사업주체에서 임의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서류유형		구비 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자격검증서류 일체	-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한자는 제외)
		○	추가 개별통지서류	-	• 사업주체가 저격여부를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통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에 [주택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 계약 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가능(본인발급용)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상의 도장과 일치해야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계약금입금증	-	• 견본주택에서는 수납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
	○		주민등록표등본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	•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 발급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	주민등록표초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	복무확인서	-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무주택 소명 서류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 계약 시 (추가제출)		○	인감증명서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주택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위임장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필요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아래 참조)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본인의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대리접수 불가)

※ 계약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외의 지역 6개월(단,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②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4항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명소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 계약세대 발생 시 예비 당첨자에게 적격여부 확인 후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행정구역,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수 분양자는 이에 대해 수인·동의합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주택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홈페이지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수분양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을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 신청인에게 귀속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주택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빛공해(단지내 도로 설치로 인한 자동차 전조등 등을 포함한다),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됨.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등은 착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임.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함.
-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발코니확장 계약, 플러스옵션 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 본 주택의 구조 및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 될 수 있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함.
- 본 공급계약은 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 기간에 따라 최고 300%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음(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해야 함)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계약자는 이에 대해 수인·동의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계약금 납부 : 아래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 제출 [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분양대금 납부계좌	**광주은행**	**1107-021-340261**	**교보자산신탁(주)**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납부일에 분양대금 **납부계좌번호로 무통장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 및 계약서에 기재된 본인의 입금계좌번호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예시:201동 1203호 홍길동: 2011203홍길동)
※ 무통장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정당 당첨자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의 미납 또는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효력이 상실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납부약정일이 변동(연기 등)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시 고지된 것으로 합니다.(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추가선택품목 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상기의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후 중도금 대출 약정일 이전에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대출조건(대출금리, 대출승인 등)에 이의가 없는 계약자는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가 가능합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 시 이자후불제 조건(분양대금의 60%)으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으로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분양사업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관련정책(대출제한 및 금리상승 등)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등으로 대출조건 및 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출제한 등) 변경, 국제금융 위기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단대출 승인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대출금융기관 알선이 불가능하거나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이 제한(불가)될 경우 공급금액을 자기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대출이자 및 인지세 등의 발생비용은 사업주체와 무관합니다.(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 본인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총 분양대금의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단,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 이자만 해당하며, 관련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하지 않음)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 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사업주체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에서 알선한 1금융권 또는 2금융권 중도금 대출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된 경우 계약자 본인의 개인신용등급에 대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에서 알선한 1금융권 또는 2금융권 중도금 대출은행에서 **계약자 본인의 개인신용 등 사유로 중도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 납부 회차에 맞추어**

계약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 비규제지역의 경우 세대당 2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거소 요건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대출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고 청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부동산 정책 및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담보비율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금액 중 일부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대출 업무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임.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 개정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함.**
-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함.**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당사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짐.**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외국인 토지법 및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등**

■ 입주예정일 : 2024년 12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지정기간에는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함.**
- **각 세대별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 지정개시일 이후 잔금 완납 후에 가능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 이 부과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VI 별도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 본 주택의 발코니 확장 비용은 분양가 포함입니다.

■ 유의 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일괄확장(일부 발코니, 하향식피난구, 보일러설치공간 등은 제외) 기준이며, 실별, 위치별, 부위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계약이 불가하며, 발코니 확장계약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공급안내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시공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에 별도의 행위허가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가 입주 후에 시공사와 무관하게 실내인테리어업체를 통하여 발코니 확장을 개별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의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 있습니다.(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발코니 확장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미확장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세대는 미확장 발코니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발코니 샤시 설치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정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입주자의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샤시, 유리창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실사용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개방형 외부공간 등에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 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1)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선택	설치위치	공급금액	비고
67A,B,C	선택1	거실+침실1	3,410,000	
	선택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380,000	
73A,B,C,D	선택1	거실+침실1	3,410,000	
	선택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380,000	
78A,B	선택1	거실+침실1	3,410,000	
	선택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380,000	
84A,B,C,D,E	선택1	거실+침실1	3,410,000	
	선택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380,000	
88A,B	선택1	거실+침실1	3,410,000	
	선택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380,000	
94A,B	선택1	거실+침실1	3,520,000	
	선택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380,000	

96B	선택1	거실+침실1	3,520,000	
	선택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380,000	
99A	선택1	거실+침실1	3,520,000	
	선택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380,000	

- 상기 천장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상기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상기 옵션 선택 시 냉매 배관 및 배수관이 천장속에 설치되어 시스템에어컨에 연결되므로, 별도의 배관 연결구가 시공되지 않으며,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시스템에어컨 옵션 금액은 매립 배관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된 가격임)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시 실외기가 설치되는 구간에 노출배관이 설치되어 미관을 해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
-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당초 계약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등 이상의 타 모델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침실1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만 시공됨.
- 시스템에어컨 옵션선택시 거실/침실1의 냉매매립배관 및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음.

(2) 가전류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주택형	모델명	제조사	공급금액	비고
빌트인 냉장고		전평형	BRS665050SR	삼성	5,500,000	
			S711SI24B.AKOR	LG	5,830,000	
빌트인 김치냉장고 (가전수납장 포함)			RQ22K5L/R01EC	삼성	2,090,000	
			K221PR14BL.AKOR	LG	2,090,000	
전기오븐	일반형		EON-B450M	SK 매직	330,000	
	고급형		EON-B401SA		660,000	
전기쿡탑	하이라이트1+인덕션2구		CIHR-D303FB	쿠쿠	330,000	
	인덕션3구		CIRS-CL301FB		550,000	
	가스1구+인덕션2구		SSGIC-3601GAH	하츠	770,000	

(3) 기타품목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구 분	주택형	설치위치	공급금액	비고
가 구	슬라이딩 붙박이장	67A,C / 78A / 88A	침실1	5,720,000	
		73A,C / 84A		5,830,000	
		84C,E / 94A / 99A		6,600,000	
	다용도수납장 (가전수납장 포함)	전주택형	김치냉장고장	1,870,000	김치냉장고 미선택 시 선택가능
창 호	현관 중문(1Fix + 2Door)	전주택형	현관	1,650,000	

	슬라이딩 도어	전주택형	침실1	880,000	
마감재	엔지니어드 스톤	67A,B,C / 78A,B / 88A,B	주방 상판, 벽체	4,180,000	
		73A,B / 84A,B,E / 96B		4,290,000	
		73C,D		3,960,000	
		84C,D / 94A,B / 99A		4,950,000	
		84E		4,290,000	
	바닥타일	67A,B	거실/주방/복도바닥	1,870,000	
		67C		3,410,000	
		73A,B		2,090,000	
		73C,D		3,740,000	
		78A,B		1,870,000	
		84A,B		2,090,000	
		84C,D		2,420,000	
		84E		4,290,000	
		88A,B		2,090,000	
		94A,B		2,420,000	
		96B		2,200,000	
		99A		2,420,000	
	원목마루 업드레이드	67A,B	거실/주방/복도바닥	2,090,000	
		67C		3,410,000	
		73A,B		2,310,000	
		73C,D		4,290,000	
		78A,B		2,090,000	
		84A,B		2,310,000	
		84C,D		2,750,000	
		84E		4,290,000	
		88A,B		2,310,000	
		94A,B		2,750,000	
		96B		2,530,000	
		99A		2,750,000	

(4) 추가 선택 옵션 납부계좌

-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당사가 적의 조정한 공사계약서에 준함.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명을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예시 : 101동 1502호 : '1011502홍길동' / 107동 702호 : '1070702홍길동')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 추가선택 옵션금 납부계좌와 주택 분양대금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람.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추가선택 옵션품목	우리은행	1005-504-303232	금호건설(주)

• 옵션품목비용을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확인서 등은 계약체결시 지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5) 추가선택 옵션품목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품목 및 계약일정, 납부방법, 선택타입, 계약주체 등은 추후 통보 예정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 후 자재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 계약 및 변경, 해제(또는 해지)가 불가하며, 공사 시작 이후 해제(또는 해지)하면 위약금과 원상회복비용(실손해액)을 부담하여야 함.
• 추가 선택품목은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계약이 불가함.(단, 계약 체결 가능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임)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부위는 카탈로그 기준(침실명은 확장형 평면 기준)으로, 상세한 사항은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람.
(설치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할 수 없음)
• 추가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람.
• 본 공고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Ⅶ 유의사항

■ 유의사항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고 수인·동의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청약 및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일반유의사항)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하기로 합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본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본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측정결과를 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입주자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입면, 단지시설물 등의 위치가 이동 되는 등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부위의 마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동별·층별 등 공급가격의 상이함을 인지하시고 수인·동의하기로 하며 이에 대해 확인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기 청약자격 전산수록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분양사업자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주택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민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주택 계약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 주택은 개정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2020.02.21.부터 거래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으로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의 체결로 인해 총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관련 유의사항)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전용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없으며 전용 85㎡초과의 경우 또한** 주택법 제2조 제6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없고,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취득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 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 및 항공기운항으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홍보 제작물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민원)
• 타 분양 목적물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과 본 분양목적물을 비교하여 분양홍보관 및 건축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 추가적인 사양이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목적물과 충분히 비교 검토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컴퓨터그래픽(CG), 영상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로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고, 주택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수립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사회재난 등에 따른 정부의 정책이나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준공 전·후 계약자(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계획승인도서 이외의 사항이 필요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계약자(입주자)가 부담하여 법적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쓰레기 보관소, 실외기, 근린생활시설, 가스정압기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 및 수인합니다.
• 본 주택은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12호)을 준수하며 층간소음·진동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수인·동의합니다.
• 입주예정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단지 내 조경, 입면 및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는 전기실 및 발전기, 유량조정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배기구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진동, 해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고 수인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계약자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컴퓨터그래픽(CG),영상 등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및 수공간,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 시에 제시된 컴퓨터그래픽(CG),영상, 세대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을 수인하기로 하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수인 · 동의합니다.
- 견본주택 및 공급안내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하여 직 · 간접(배기설비)적인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등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 · 수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체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하며 사업주체 변경 시 입주자(계약자 등 포함)는 이를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 인터넷홈페이지의 VR동영상은 3D,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내 · 외부 조경, 경관조명, 단지 내 · 외부 조명 및 사인,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조정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 입주자의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용도별로 별도 설치하지 않고 통합으로 사용 및 설치된 부분(공용부분의 상하수도, 전기 등)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는 입주자(입점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관리 상 필요시 타용도의 입주자(입점자) 및 이용자가 주택 공용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수인 · 동의합니다.
- 배치계획 상 동별 주차구획 배분이 다를 수 있으며 일부 동의 경우 지하주차장에서 주동 출입동선이 멀어 불편할 수 있으니 주동 출입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인지 · 수인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 공용 파이프 샤프트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우수조, 저수조, 유량조정조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세부계획은 변경될 수 있고, 마감자재는 동등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출입구의 경비실 위치 및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조망, 일조권 등은 주변 개발 행위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다를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경보음 포함) 및 자동차 전조등, 보안등, 수목투사등, 볼라드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환기용 구조물, DA와 지하주차장 램프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공계획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조경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일부 침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붙박이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상 · 하부장 및 아일랜드장, 욕실장,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 은폐부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실시공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기울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입니다.
- 전기실, 발전기실에 인접한 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주거동 내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 · 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각 동 출입구와 인접한 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골조상이,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케팅을 위하여 제작 된 약도 및 지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위한 제작물이므로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필히 현장 및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층 단차, 건물 구조 등으로 인해 조성되는 외부공간(테라스 등)에서 입주민으로 인한 소음 및 각종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 층 단차, 인접세대 테라스와의 인접성으로 인해 프라이버시가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입면, 단지시설물 등의 위치가 이동 되는 등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동옥탑부, 벽면, 문주 등에 설치 예정인 단지명, 설치위치, 디자인 등은 본 시공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CG에 적용된 외부 로고 및 사인은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본 시공시 금호건설 가이드라인에 맞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15층 이하의 단지로서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적용 받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지상 주차 및 필로티 하부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 및 수인합니다.
- 본 주택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
- 견본주택이 설치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분양안내문, 견본주택 비치용 (사업계획(변경)승인) 설계도서 확인 및 분양상담을 통해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분양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CG 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공급안내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CG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월패드 등의 모든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기계환기장치, 천정 환기구,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과 수량, 위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통신수구, 온도조절기, 환기컨트롤러, 환기디퓨져, 바닥드레인, 선홈통, 수전류 등의 제품 사양, 위치,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월패드, 배선기구, 스위치, 조명기구,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등의 위치 및 제조사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등기구 조도량 [lx]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 된 것이며 본 공사 시 KS조도기준 동등 이상으로 적용 됩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및 전시품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공사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될 예정인 바,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은 연출된 사항으로 실제로 시공 설치되지 않는 사항이며,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확인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연출용 제시부분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건식벽체,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 부분의 디테일이 시공 상의 이유로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창호는 규격 및 사양(유리 및 틀),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 일부 돌출 및 일부 실의 천정고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시설의 수량, 용량, 위치, 타입 등은 관련법령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안내책자(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견본주택,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 중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 타 전시용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견본주택의 주방TV 설치 방식은 연출용이며, 본 공사 시 전원, 통신, TV용 케이블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엔지니어트 스톤은 실제시공 될 엔지니어드 스톤과 상이하며 실제 시공예정인 모델은 POP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테라스/발코니는 연출된 설정으로, 바닥의 데크 및 잔디, 시설물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외부 마감재는 참고용으로, 본 공사시 재질 및 규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복층 계단은 참고용으로, 본 공사시 재질 및 규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지)
- 개발 · 실시계획 등의 인허가 변경, 현장여건 변경,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 외부 지구내외 도로 계획 및 선형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설물의 위치, 구조, 색채와 지반고 등은 추후 측량결과와 지반현황 및 각종 평가/심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방범 및 안전 사유로 대지경계 상 펜스 등 설치될 수 있으며, 보도통행이 불가할 수 있음.

- 배치도, 조감도, 투시도 등 CG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시공시 포장 재료 및 패턴, 마감재료와 시설물의 디자인, 위치 및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가 포함되며 이로 인해 악취 및 해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가스저장시설이 설치되며 (110동, 111동, 113동, 114동 인근)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진동, 해충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2동 하부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설치되며, 인근 세대는 이로 인한 빛 공해 및 소음, 진동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하부에 지하주차장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제연팬 가동시 일부 저층 세대에서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동 하부 지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주차차량으로 인한 매연, 불빛, 소음, 건설공사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구역은 102동, 103동, 104동 지하주차장 측에 편중되어 있으며 기타 동은 전기차 충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109동, 110동, 111동, 112동, 113동, 114동의 경우 전기차 충전구역과 주동의 거리가 다소 멀어 이용이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레벨과 단지 주변 레벨의 차이로 인하여 단지를 둘러 옹벽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101동, 107동, 108동, 109동, 110동, 112동 저층세대는 세대 내에서 옹벽이 보이는 구간이 발생하오니 이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일부 구간이 다소 협소하여 주차 후 문열림 공간이 부족하며 벽 및 기둥에 문이 부딪힐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진입부가 협소하여 문주가 설치 불가하오니 이 점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102동, 103동, 104동, 106동은 지하주차장, 101동, 103동, 106동, 107동, 108동은 옥외주차장, 104동, 105동, 109동, 110동, 111동, 112동, 113동, 114동은 필로티 하부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여건상 동 별 주차 환경이 상이하오니 이 점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라오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102동, 103동, 104동, 106동 일부세대는 지하주차장에서 주동으로의 진입이 가능하나 101동, 105동, 107동, 108동, 109동, 110동, 111동, 112동, 113동, 114동은 지하주차장과 주동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급경사로 인해 눈, 비로 인한 미끄러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하부 지상주차장 구획면에 경사가 발생하여 일부 구간은 주차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레벨차로 인해 지상주차장 진입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니 이 점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레벨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반층 포장 마감은 추후 설계변경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도 및 차도 위치와 동선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진입부에 경계석이 설치되어 진입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니 이 점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지하층에 전기실, 저수조 등 공용시설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 및 매연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저류지가 위치하며 이로 인한 악취 및 해충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저류지 및 대지 경계 옹벽의 마감 및 형태, 구조, 위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구간에서 보행자 통로가 연결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레벨차로 인해 각 주동 별, 호수 별 지상주차장의 유효높이(필로티 하부 유효높이)가 다르니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9동, 110동, 111동, 114동 하층부에 DA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 및 마감의 재료, 재질, 색상, 문양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대 및 재활용품 보관소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선정 후 설치될 예정입니다.
- 쓰레기분리수거대 및 재활용품 보관소는 일부 세대 내에서 보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악취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탑(DA) 및 쓰레기 집하시설과 재활용품 보관소, 자전거 보관대는 본공사 과정에서 일부 사양, 디자인, 수량, 위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공용홀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 개인의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문주가 없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 동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으며, 본 공사시 위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 모든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가 불가하며,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 외에는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계약해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택 배치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과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옥탑, 지층, 측벽, 입면 등의 디자인 변경이 생길 수 있으며 일부동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구,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함 등이 일부 세대에 인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냄새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9동 하부에 주민공동시설이 배치되며 이로인한 소음 등의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냉난방기 가동시 일부 세대에서 실외기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명칭, 동번호, BI 및 색채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레벨차로 인해 과다한 경사로가 생길 수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램프 이용시 이동동선이 과다해 질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내의 기계실 등으로 인해 소음, 진동 등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일부 구간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동일하게 배정되지 않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의 일부 구간에서 물고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획여건에 따라 주차구획(지하주차장) 위치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인해 중량물 거치시 낙하의 우려가 있습니다.
- 최상층에 다락방이 설치되며, 각부 천장고는 본 시공시 경미한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등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 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마감 및 창문의 스펙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에 따라 녹지 및 시설 설치 부분 및 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에 의한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
- 109동, 110동, 111동, 114동 하부층에 DA가 설치되며 낙엽, 우수, 눈 등이 쌓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지관리 및 유지보수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 1층 동출입구의 형태 및 디자인은 동 별 상이하오니 이 점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지 레벨로 인해 103동, 106동, 112동, 113동 동출입구에는 계단 및 램프가 설치됩니다.
- 1층 세대는 지상 소방차 이동동선, 차량 이동동선, 입주민 이동동선 및 모임과 활동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있는 주동 하부는 출입구로 인해 유효높이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주동 필로티 하부 주차장 및 옥외 주차장 포장은 투수성 블록으로 마감되며, 주차시 블록 깨짐 및 들뜸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포장 마감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필로티 하부 주차장 및 옥외 주차장 진입시 경계석으로 인한 진입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필로티 하부 주차장 및 옥외 주차장 진입시 대지 경사로 인한 진입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필로티 하부 주차장 및 옥외 주차장 주차구획은 에폭시, 블록, 아스콘 등으로 마감되며 동별, 위치별 여건에 따라 마감이 혼용됩니다.
- 주동 필로티 하부 주차장 및 주차구획 마감은 동일 주차면 내에도 혼용되어 사용되는 구간이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저류지 부근 옹벽은 전석쌓기로 시공되며, 본공사시 위치나 높이,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류지 부근 옹벽 상부엔 돌담 쌓기로 시공되며 추후 안전펜스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 및 구획, 자전거 주차대수 및 위치는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대는 102동, 103동, 106동, 111동 인근에 설치되며 본 공사시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승강기, 주현관 등에 CCTV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소방차 정차 및 활동 공간, 비상동선구간은 잔디 외의 식재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인접 저층부 세대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운행속도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향후 주변 근린공원, 보행통로, 가로수, 도로 등의 설계 및 행정관청의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외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 난간이나 구조물의 마감,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경 및 세부 조경(식재, 시설물, 포장 등)계획은 분양홍보물(CG 등)상에 설명된 것과는 상이하게 현장의 실제 여건상 규모, 위치 등이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 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도로의 선형 및 포장, 조경 시설물의 색채, 형태, 지료, 위치 및 조경수의 식재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관련 홍보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식재, 시설물, 포장 등의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정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후 변경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식재 구간 중 동의 일부구간은 소방법상 비상 시 공기안전매트 설치를 위해 식재를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저층부 일부 호실은 사생활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 보관소, 자전거보관소는 법 또는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에 따라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인허가 관청의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형태,수량 등은 심의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상가) 주변 지상주차장은 2대로 설계되어 있음.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공용홀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 개인의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함.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써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단위세대)

- 단지 및 세대 내부 여건을 확인하신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바닥레벨과 세대 내 바닥레벨이 상이하며 이로 인해 턱이 발생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로 나가는 창호에는 난간대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외부 창호 및 난간은 ASA 방식으로 어두운 컬러가 입혀질 예정으로, 견본주택에 시공된 것과 색, 질감, 패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천장고는 2,400mm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시공시 세대간 단차 및 단열 계획에 의해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4층이며 다락 지붕은 경사 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해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 출입 형태, 주차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배치 구조와 동별, 호수별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 환경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등 생활의 불편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및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 도로(지하/지상주차장 램프 포함)와 인접한 세대는 자동차 소음 및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전세대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상가) 및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배치에 따라 채광이 부족한 세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창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 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E/V 승강로 및 기계실과 인접된 세대는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출입구엔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차량 승하차 시 기둥에 간섭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 출입 경사로 부위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주변에 지하주차장 팬룸, DA, 환기구, 기타 지상 돌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109동 지하1층에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어 저층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견본주택), 팸플릿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견본주택), 팸플릿, CG 등 각종 홍보물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표현되어 있으며, 본 공사에서는 전시품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홍보관(견본주택), 팸플릿, CG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가진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대체 될 수 있습니다.
- 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의 마감자재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분양홍보관(견본주택),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와 다소 상이한 색상과 무늬의 자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은 물건을 적재할 수 없으며, 적재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전열교환기 등 환기장치 및 덕트가 노출로 설치되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등은 미관개선 및 기능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은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위치를 예상하여 선정하였으며 위치 변경이 불가합니다.
- 월패드, 배선기구, 스위치, 조명,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등의 위치 및 제조사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고 및 실 규격은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비확장 발코니는 건식으로, 바닥배수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혹은 보조주방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됩니다.
- 세대 천장에 스프링클러 헤드 및 소방용 감지기가 설치됩니다.(견본주택 내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헤드 및 소방용 감지기는 견본주택용이며, 본공사 시엔 소방법규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가스배관 및 계량기, 환기팬 등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 위치에 따라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욕실 천장 및 주방가구 상부에는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마감자재 내역은 주택 타입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 길이 및 높이, 실외기 설치 공간 등)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발코니(세탁실)공간이 협소하여 대용량 세탁기 설치가 제한되거나, 세탁기문과 벽 및 기타설비와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에 적용된 자재 중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나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 벽체의 문양과 색상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장 뒷면 및 주방가구 뒷면 벽체 타일은 설치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가구 하부와 후면벽체,천장에는 마감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바닥재, 벽지 및 벽타일, 인조대리석 등은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벽지(도배) 공법상 초배지+정배지 봉투바름 시공 시 벽면과 도배지가 밀착되지 않습니다.
- 주방 아일랜드식탁은 바닥마감 없이 고정됩니다.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자동식소화기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의 일부가 조정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에 가스배관 및 가스 계량기가 노출 설치되며 본공사시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다용도실에 가스 보일러가 설치되며,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고, 본공사시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보일러 연도의 결로로 인해 낙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절기 결로낙수와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 발코니, 실외기실의 경우 비난방공간입니다..(욕실내 욕조, 샤워부스, 양변기, 세면기 하부, 주방의 냉장고, 김치냉장고 하부 공간은 바닥 난방 시공 제외)
- 각실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기구류(콘센트, 조명기구, 환기구 등)의 사양 및 설치위치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실내환기는 전열교환 환기방식으로 기계환기 설비가 적용되어 있으며, 실외기실 천정에 전열교환기 및 덕트가 노출 설치되고,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 발코니, E/V홀 등의 바닥 단차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이 내부에 있어 에어컨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구조벽 외 조적벽체, 경량벽체 등이 시공될 예정입니다.
- 거실 아트월 및 주방벽 하부는 걸레받이가 미시공됩니다.
- 각 단위세대 형별로 평면계획에 의거 주방가구 길이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이며, 일부 발코니에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선반은 각 형별에 따라 폭이 상이할 수 있고, 높이조절·접힘·걸침기능이 가능한 시스템선반이 설치되며 과도한 중량물 사용 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공사용 하드웨어는 본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에 설치되는 외부창호의 개폐 위치 및 방향은 본공사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현관중문(선택시 유상옵션)은 본공사 시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이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 배관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은 습식욕실로 시공됩니다.
-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평형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욕실천정에 설치되는 욕실팬은 평형별로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실내 환기는 전열교환환기시스템을 적용하며, 덕트 및 디퓨져는 거실과 각 침실천장에 시공되며 작동 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도꼭지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일부 발코니에는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주방가구,욕실가구,신발장,침실 붙박이장) 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 기본설치 품목인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은 거실 및 침실1에만 설치되며,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설치됨. 또한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냉매매립배관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팸플릿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조명기구는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위치 및 색온도등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아일랜드식탁에 매립형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아일랜드식탁 이동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4층 옥탑 테라스는 무근 콘크리트 마감 처리됩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타입의 전열교환기의 위치는 하향식 피난구의 위치에 따라 층별 교차 시공됨.
- 실외기실에는 배수구 및 배수입상관이 노출 설치되나 이는 물이 유입되는 비상시를 위한 시설이며 방수가 적용되는 실이 아니므로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각 실 옵션 선택형에 따라 조명 및 스위치의 설치위치, 설치 방향 및 수량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설비제품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의 깊이 축소 및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음.
- 기본 에어컨이 아닌 추가설치 에어컨은 실외기실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함.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추가 설치 시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를 설치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함.
- 양변기는 절수형 양변기를 적용하여 일반양변기에 비해 배출 성능이 약하게 느껴질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발코니(세탁실)공간이 협소하여 대용량 세탁기 설치가 제한되거나, 세탁기문과 벽 및 기타설비와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후드 상부장에는 주방자동소화장치가 가스, 전기 겸용으로 설치되며, 후드 상부장 일부 공간을 사용할 수 없음.
- 하이브리드 쿡탑 옵션 선택시에도 주방 가스 공급용 배관이 기본과 동일하게 설치되며, 상부장 하부에 가스 차단기 설치 후 캡마감 처리됨.
- 견본주택에 표현된 테라스 난간 및 외벽의 재질, 형태, 색상 등은 본공사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욕실 출입문은 합성수지 재질이며, 욕실 천정재는 ABS 판넬로 시공되며 천정에 점검구 시공 예정임.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시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의 드레스룸, 팬트리, 욕실에 바닥 난방이 적용되며, 별도의 난방조절기는 설치되지 않고 평면에 따라 거실 및 인근 침실에서 통합 제어됨.
- 당 현장은 물절약 정책의 일환으로 세대 수압을 2.5kg/cm2 으로 제한되므로 수압이 약하게 느낄수 있음.
- 양변기는 관련법에 의거 절수형 양변기를 적용하여 일반 양변기에 비해 배출 성능이 약하게 느껴질 수 있음.

- 소방 관련법에 따른 제연설비가 설치된 주택에는 일부 세대의 현관 출입문에 차압측정공이 설치됨.
- 사물인터넷(IoT)의 가전기기 제어 서비스는 입주자가 별도 구매한 가전기기 중 SKT와 제휴된 IoT가전기기에 한하며, 연동하기 위한 세대 내부 무선 WiFi용 무선AP 및 연동가전, AI스피커(SKT제품에한함)등은 입주자가 구입, 설치하여야함. (입주 시기 정책에 따라 IoT 제휴사는 경 될 수 있음)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의 경우 이통사/포털사의 서비스가 포함 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의 정책에 따라 3년간 무상서비스제공 후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
-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유료 부가서비스의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홍보물등에 명시한 IoT관련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시 일부 서비스의 변경 또는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동체감지기가 설치 됩니다.(주택1~2층 및 최상층의 경우는 발코니 및 침실의 창호 측면부등에 각 1개소 설치되며, 기타층은 거실 창호 측면부에 1개소 설치됨)
- 일부 침실 문 뒤 벽에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이 설치 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근동은 차량 진·출입 시 경보음 발생과 차량전조등 불빛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동별 승강기 설치 인승, 속도 적용기준은 관련 법률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세대 조합별 운행층수에 의한 규격으로 적용 설치될 계획이며,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승강기 이용 세대수 차이가 있음.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검토를 위하여 샘플하우스(현장 주택전시관)로 사용될 수 있음.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입주자 사전방문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임.(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주택을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주택과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이 필요함.
- 103동 1층 테라스 세대는 저류지와 인접한 세대이며 이로 인해 악취, 해충, 소음 등의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3동 1층 테라스는 저류지측 전석 및 돌담과 일부 간섭되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다용도실 창호 너비는 W=1,200으로 변경 시공됩니다.
- 세대 내 실외기실 그릴창 상부에 전열교환기 급기, 배기구가 추가 설치됩니다.
- 다락 바닥, 옥탑부, 주동 지붕 등에 문제가 발생할 시 다락 출입이 필요할 수 있으며, 다락 출입시 최상층세대(4층세대)의 세대 내부로 진입해야 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라오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상층세대(4층세대) 다락방에 바닥 난방 시설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에서 테라스로 통하는 창문의 턱이 다소 높아 노약자 및 장애인, 어린이의 출입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라오며 이로 인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Ⅷ 기타 계약자 안내

■ 친환경 주택성능 수준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3항)

검토 결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평가 검토서

한국감정원 녹색건축처

1. 일반사항

건축물 명칭	애월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사업주체	제주시애월지역주택조합							
건축물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애월읍 광령리 2860외 16필지							
세대구분	전용면적[㎡]	67.896	88.8236	78.106	67.8960	73.8235	96.6551	84.9595
	세대수	20	20	20	20	12	12	12
	전용면적[㎡]	73.8235	84.6080	99.8346	94.104	84.608	총세대수	
	세대수	12	18	18	18	18	200	

2. 검토결과

1) 설계조건 충족여부 : 적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55호「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의 제7조제2항에 따라 벽체 및 창호 성능이 친환경주택 단열 및 기밀성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열원설비 및 고단열 고기밀 강제문, 창면적비, 조명밀도, 신·재생 에너지설비 설치의 기준을 만족함.

2) 의무사항 준수여부 : 적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55호「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의 제7조제3항의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함.

3. 세부 검토사항

가. 설계조건

1) 창 및 벽체 등 단열, 기밀성능, 고단열·고기밀 강재문

구 분	평균열관류율(W/㎡K) 기준		검토결과
창의 단열	외기 직접	1.5 W/㎡K 이하	적합
	외기 간접	1.7 W/㎡K 이하	
벽체 등 단열	별표2의 친환경주택 단열성능 기준		적합
고단열 고기밀 강재문	고시 제7조제2항제4호의 기밀성능, 단열성능 기준		적합
발코니 외측창 단열	2.4 W/㎡K 이하		적합
외기직접 창 기밀성능	기밀성능 1등급 이상		적합

2) 열원설비

구 분	기 준	검토결과
개별난방	환경표지인증제품 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사용	적합

3) 창면적비

구 분	기 준	검토결과
단위세대 타입별	고시 제7조제2항제5호의 창면적비 기준	적합

4) 조명밀도

구 분	기 준	검토결과
전 단위세대 공통	8 W/㎡ 이하 또는 전면 LED로 설치	적합

5) 신 · 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등

구 분	기 준	검토결과
조명에너지 신재생 적용	각 항목별 평가지표 합계 10점 이상	적합

나.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무사항	기 준	검토결과
건축부문 설계기준	고시 제7조제3항제1호	적합
기계부문 설계기준	고시 제7조제3항제2호	적합
전기부문 설계기준	고시 제7조제3항제3호	적합

4. 신청도서 검토 후 보완을 완료한 사항

해당분야	보완 완료된 내용
창호일람표	창호 형별 구분하여 형별 기호 기재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보일러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주방에 1개 이상 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를 설치

아울러, 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평가 검토서의 보완완료 사항과 신재생에너지 설비부문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성능지표상의 중복반영 여부를 허가기관에서도 반드시 제출받아 확인하시고,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평가서로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 및 주택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순번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사업부지		현황
	지번	지목	소유자	공부상 면적	사업부지 편입면적	
1	광령리 2680-2 외 19필지	대, 원, 임, 전	제주시애월지역주택조합	29,313	29,313	₩ 24,000,000,000원 한국주택금융공사 건설자금보증대출 관련 광주은행 근저당설정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분양보증을 득한 주택임

보증서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12022-101-0001200 호	이백오십삼억팔천일백구십칠만이천원정 ₩25,381,972,000	입주자 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주택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 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기타

※ 당사가 본 주택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및 분양자(또는 임대인)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분양자(매도인 또는 임대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 또는 임차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또는 임대수입금(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분양전환금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할 일체의 금원을 포함한다)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주택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회 사 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주체	제주시애월지역주택조합	206-82-77364
시 공 사	금호건설 주식회사	104-81-31309
감리업체	주식회사 부산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605-81-33834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안내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680번지 (연락처 : 1899-2787)

■ 분양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 www.jejuthehill.com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제주애월 더 힐 테라스 견본주택에 문의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